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2026-제6호 입법정책 동향

2026.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발행부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80-4415)

편집·검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팀(☎ 280-4414)

인　　쇄: 2026년 6월 일

발　　행: 2026년 6월 일

목 차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 7

2 [제정]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12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1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7.1., 11.30. 시행) ····· 18

2 [일부개정] 「공연법」(2026.3.25. 시행) ····· 22

Ⅲ. 입법·정책 현안

◇ 중동전쟁에 따른 아세안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 26

Ⅳ. 해외 법제 동향

1 미국의 AI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 ····· 30

2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 ····· 33

Ⅴ. [법제처] 자치법규 법령 해석 사례

1 가액범위 초과 경조사비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 허용 여부 등 ···· 38

2 대리인 등 통장으로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 42

Ⅵ. [생활법령정보] 이야기로 풀어보는 재판

1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비대면 대출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 ····· 50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시행 2026. 3. 4.] [경기도조례 제8872호, 2026. 3. 4.제정]

□ 관련 상임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제정이유

○ 버스,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의 우회전 과정 사고 지속 발생

○ 대형차량에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를 권장 · 지원 ·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도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규정 (제1조 및 제2조)

○ 적용대상, 도지사의 책무, 설치 권장 및 지원 규정 (제3조～제5조)

○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 교육 ·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제8조 및 제9조)

□ 입법 시사점

▲ 경찰청 분석 결과, '25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49명 중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9%를 차지하고, 이 중 버스가 포함된 승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간 총 219건이 발생함

<'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경찰청)

구 분	우회전 교통사고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전체	보행자	비율(%)	전체	승용	승합	화물	기타
사 고(건)	14,650	3,058	20.9%	3,058	2,266	219	401	172
사 망(명)	75	42	56.0%	42	9	17	11	5
부 상(명)	18,897	3,120	16.5%	3,120	2,340	205	404	171

▲ 또한, 경찰청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일시정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우회전 차량에 의해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의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보를 제공하는 기술*은 관련 사고 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AI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 횡단보도나 도로 주변의 보행자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운전자에게 경고음이나 전광판을 통해 주의를 주거나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등의 첨단 안전 시스템

◎ **전북도 유사조례: "없음"** (경기도 유사 조례 시행중, '26.3.4.제정 / [붙임2] 참조)

붙임1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차량의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도내 시군에 해당차량을 등록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란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에서 보행자, 자전거 등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형차량 중에서 우회전 시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 및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권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대형차량에 대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형차량에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성능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범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군, 연구기관, 운수업체 등과 협력하여 대형차량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등) 도지사는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대형차량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사용법, 시야 사각지대의 위험성,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형차량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안전수칙에 관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구축)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민간단체, 각급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6.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2026.5.7.시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선버스의 우회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신고가 수리된 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란 노선버스가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선버스의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 및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권장) 시장은 노선버스에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선버스에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범사업 추진) ① 시장은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연구기관, 운수업체 등과 협력하여 노선버스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 홍보 등) ① 시장은 관내 노선버스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사용법,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 · 캠페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민간단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6. 5. 7. 조례 제3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4. 20.] [인천광역시조례 제7725호, 2026. 4. 20. 제정]

□ 관련 상임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개정이유

○ 최근 청소년 · 청년층 중심으로 픽시(Fixed Gear)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앞 · 뒤 브레이크가 부재 또는 일부만 장착된 상태로 운행되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음

○ 현행 법령만으로는 픽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관리·사고예방에 한계가 있어, 조례에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여 안전보호 및 건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픽시 자전거'**) 일반적인 자전거와 달리 페달과 뒷바퀴가 항상 함께 회전하도록 설계된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로써 주행 중 페달을 멈춘 상태로 유지할 수 없고, 페달을 역방향으로 돌리면 뒷바퀴도 함께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후진 가능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안전의무 규정 (제3조)

○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 수립 규정 (제4조)

○ 안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 규정 (제6조)

○ 픽시 자전거 이용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 규정 (제7조)

○ 관계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규정 (제8조)

□ 입법 시사점

▲ 픽시 자전거가 제조·유통·사용되는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의 범주에 해당됨

▲ **최근 청소년층에서 픽시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이에 경찰청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아 안전운전 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함**

*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경찰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25. 8. 18.)

▲ 이에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북도 유사조례: "없음"**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유사 조례 시행중)

붙임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픽시 자전거”란 페달과 뒷바퀴가 항상 함께 회전하도록 설계된 고정기어(fixed gear) 방식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픽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미부착 운행 방지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 홍보) ①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경찰청, 자치군·구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7725호, 202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1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시행 2026. 7. 1., 2026. 11. 30.]

□ 개정이유

○ 낙후 지역 중심으로 시외·고속버스의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 제약 발생

○ 이에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유류 구매비용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제고

○ 또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 대응

□ 주요내용

①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② **(유류구매비용 지원)** 국가 또는 시·도지사 등은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및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구매한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제3호)

현 행	개 정
<신 설>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 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거나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요건,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신 설>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현 행	개 정
<신 설>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입법 시사점

▲ 「유가보조금 지원(제50조 제5항 등)」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은** 「지방세법」 제1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중앙정부에서 협의하여 지자체별로 안분하며, **지자체별로 예산을 집행함**
- 자원안보위기 상황에 노선 폐선(축소)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운수사업자 부담 완화

※ [참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절차

① 울산광역시장(주된 특별징수의무자) 세원 징수 → ② 지자체별 예산 안분 → ③ (운송사업자) 유류 구매 및 보조금 신청(연료구매카드로 결제, 카드사 통해 자동으로 유가보조금 청구) → ④ (국토부) 주유 정보 검증(전산망) → ⑤ 최종 승인된 보조금 지급액 확정

※ (전북도)「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시행中

2 [일부개정] 「공연법」[법률 제21582호, 2026. 4. 28., 일부개정 / 시행 2026. 10. 29.]

□ 개정이유

○ 현재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좌석 수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은 제외되어 있음**

○ 1천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특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중·소규모 공연장이 방화막 설치를 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①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 정의)** 방화막 의무 설치 대상 공연장을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정의 (제11조의7제1항)

※ (현행) 좌석수 1,000석 (시행령) ⇒ (개정) 좌석수 300석 (법률)

② **(방화막 설치 비용 지원 대상)** 제1항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공연장이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 지원이 가능 (제11조의7제2항 신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은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규정 (부칙 제3조)

현 행	개 정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 ---------- ----------.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하며,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현 행	개 정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신설>	제2조(방화막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입법 시사점

▲ 전북자치도 내, 300석 이상의 관람석을 보유한 국립 및 공공 공연장은 총 21개이고, 300석 미만의 관람석을 보유한 공연장은 23개임

- 출처: KOPIS(공연예술통합전산망) 자료
- 주요 지자체 300석이상 공연장: 경남(30개), 강원(29개), 전남(28개), 충북(15개)

▲ 이번 개정으로 기존 운영중인 300석 이상의 공연장 중, 방화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연장은 경과규정에 따라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함

▲ 본 개정을 통해 공연장의 안전 기준을 실질적인 위험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Ⅲ. 입법·정책 현안

Ⅳ. 입법·정책 현안

◇ 중동전쟁에 따른 아세안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 출처: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5.18.) / 박찬홍

▲ 2026년 2월 28일 발생한 중동전쟁으로 중동산 원유에 대부분 의존하는 아세안 지역에 에너지 위기 발생

▲ 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긴급 조치 및 정책을 통해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적인 측면이 있고, 재정 악화의 위험성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중장기적인 설계를 통해 전기, 바이오연료 및 대체에너지 활성화로 석유와 가스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함

1 중동전쟁과 아시아의 에너지 위기

○ **(중동전쟁 발생)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석유, 가스 등) 공급 차단**

- 전쟁 영향으로 휘발유, 가스, 전기 등의 가격 인상과 더불어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빈곤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와 실태) 아시아 지역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이며, 석유 및 LNG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이 두드러짐**

- 2025년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에서 중동지역을 제외하고 아시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중동전쟁으로 운송업 위기, 제조업 생산 중단, 경제적 어려움 등을 초래함
- 아시아 각국 정부는 보조금 확대, 연료사용 제한, 공무원 재택근무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2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대응책

○ (국가별 대응 방안) 수요 억제, 가격 상한제, 보조금 확대, 공급 다변화 추진 등 긴급 에너지 대응 조치를 시행 중

참고 | 에너지 위기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대응 방안

국가		주요 대응 방안
말레이시아	에너지 관리	• 보조금 적용 휘발유 RON95 가격을 리터당 1.99링깃(약 752원)으로 동결, 보조금 연료 밀수 차단을 위한 국경 감시 강화(3.11) • 사재기와 밀수 방지, 공정한 분배와 충분한 공급망 보장을 위해 차량 종류별 연료 구매량 제한(3.26) • 4월 15일부터 정부 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에 재택근무 제도 도입(4.2)
	재정 지원	• 4월 21일부터 디젤 지원 프로그램의 현금 지원 인상, 벼농사 농가에 대한 재배 장려금 인상(4.14) •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5백만 링깃 추가 배정, 식량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5천만 링깃 배정, 인플레이션 영향 완화를 위해 총 3천만 링깃 배정(4.16)
	공급망 확대	• 국영석유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와 러시아 간 원유구매 협상 추진 예정(4.18)
	에너지전환	• 팜 원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활용하여 B15~B50 규격의 바이오디젤 및 제트 A1 항공유 생산 발표,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4.19)
미얀마	에너지 관리	• 연료 절약을 위해 승용차와 오토바이는 홀수·짝수 번호판에 따라 격일제 운행
	공급망 확대	•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등을 위해 러시아와 전력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4.18)
베트남	에너지 관리	• 국내 기업들에게 직원 재택근무 장려, 연료 사재기 및 투기 금지 촉구(3.10).
	재정 지원	• 4월 30일까지 연료 수입 관세 철폐(3.9). 6월 30일까지 연장(4.20)
	공급망 확대	• 팜 민 찐 총리, 러시아 방문, 석유 및 가스 생산 협력 협정 체결(3.23)
	에너지전환	• 러시아와 베트남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한 협력 협정 체결(3.23) • 2027년 2월 종료 예정인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4.20)
브루나이	에너지 관리	• 국가 석유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 등록 차량에 대해 입국 시 연료량을 최소 4분의 3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4.1)
싱가포르	에너지 관리	• 정부 시설의 에어컨 온도 섭씨 25도 이상으로 설정. 전력 회사들에게 디젤 비축량 유지를 의무화
	재정 지원	• 배달원, 택시 운전사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에게 4월 말부터 1인당 200싱가포르달러(약 23만원) 지급, 9월에 약 240만 명의 국민에게 1인당 200싱가포르달러의 생활비특별지원금 지급(4.7)
	공급망 확대	•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복원력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협력하겠다는 공동 성명 발표(3.23)
인도네시아	에너지 관리	• 공무원 대상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인도네시아 에너지 기업의 생산 물량을 자국 시장에 우선 공급
	재정 지원	• 에너지부 장관, 2027년까지 유가 인상 없다고 발표(4.16) •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관세 기존 5%에서 0%로 철폐, 플라스틱 포장 원자재에 0%의 수입 관세 도입(4.28)
	공급망 확대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2026.4.13.) 결과, 러시아산 원유 1억 5천만 배럴을 특별가에 확보 발표(4.23)
	에너지전환	• 대통령의 일본 방문 계기로 일본과 마셀라(Masela) 블록에 위치한 아바디(Abadi) 가스전 개발 가속화에 합의(3.30) • 액화석유가스(LPG) 수입국을 중동에서 미국, 호주 등으로 전환, 중동 수입 원유를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로 재분배(4.6) • 선박, 열차, 트럭 등의 장비에서 약 6개월간 진행된 B50 바이오디젤(경유와 팜유를 50대 50으로 혼합 연료) 시범 운용 성공(4.7) • 2026년 7월 1일부터 B50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경유 수입 중단을 발표(4.19) •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 싱가포르와 약 300억 달러(약 44조 1,900억원)의 재생에너지 파트너십 참여 발표(4.23)
캄보디아	재정 지원	• 정부가 디젤 및 LPG 공급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를 부담(4.6.)
	공급망 확대	• 베트남과 중국의 연료 수출 제한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연료 조달(3.18)
	에너지전환	• 따따이 강(Tatai River) 상류 어퍼 따따이(Upper Tatai) 양수발전 사업 착공(4.12)
태국	에너지 관리	• 연료 수출 일시 중단(라오스와 미얀마 제외)(3.1) • 의무 예비력 비율을 1%에서 3%로 인상, 15일 동안 경유 가격을 리터당 29.94바트로 상한선 유지(3.5) • 공무원 에너지 절약: 재택근무, 해외 출장 중단, 전력 사용량 줄이기 등(3.10) • 대체 원유 공급국 확보, 재택근무 권장 등을 포함한 1·2단계 비상 대응 조치 시행 중. 최고 에너지 위기 단계인 3단계 계획 준비(3.31) • 4월 7일부터 팜 원유(CPO: Crude Palm Oil) 수출 시 사전 서면 허가를 의무화
	재정 지원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 총 77억 바트(약 3,555억 원) 규모의 종합 구제책 승인(4.12)
	공급망 확대	• 이란과 태국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에 관한 협정 체결(3.28). 아세안 국가 중 이란과 독자적 통항 협정을 체결한 첫 사례
	에너지전환	• 태국만·미얀마산 파이프라인 가스 생산 확대, 석탄·수력 발전소 전면 가동

○ **(아세안 공동 대응) 2026년 4월 27일 아세안 에너지장관 특별회의(AMEM)를 통해 중동지역 정세와 에너지 안보에 관해 논의**

- 에너지원 및 공급 경로 다각화, 재생(대체) 에너지 개발, 다자간·다방향 전력 거래 등이 화두
- 회원국 간 비상 대응 체계 유지 등 공동 대응을 전제로 '아세안 석유 안보 기본 협정(APSA)'의 중요성 강조

3 현 대응책의 위험성과 중장기적 에너지 확보 전략

○ **(위기 대응책의 위험성) 현재 대응 전략은 주로 임시방편적인 조치로써 전반적인 에너지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취약성에 빠질 수 있음**

- 석탄 기반 에너지에 대한 의존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
-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강대국에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
- 보조금 확대는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며, 에너지 조달 차질로 인해 에너지 위기뿐 아니라, 식량 위기로도 연동될 수 있음

○ **(중장기적 에너지 확보 전략) 새로운 에너지 투자 전략 마련과 중장기적인 조치를 통해 전기화와 바이오연료로의 대체화 추진**

- 석유 비축을 위한 로드맵 구축과 국경을 넘는 전력 거래 촉진 필요
- 대체가능한 바이오연료 및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에너지나 산업 등을 장기적으로 재설계 하거나 수요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Ⅳ. 해외 법제 동향

Ⅳ. 해외 법제 동향

1 미국의 AI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

【국회도서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96호, 2026.4.28.】

□ 주요내용 (요약)

○ 현재 광고나 시청각물에서 AI를 이용한 모사물이 빠르게 생성되고,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실제 인물의 음성 · 모습을 디지털 기술로 모사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여부와 당사자에게 디지털 모사물의 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이 중요해짐

○ 최근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과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이라는 법적 개념이 언급되고 있음

- **(퍼블리시티권)** 개인을 식별하는 속성(성명, 서명, 음성, 사진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지 여부와 그 이용방법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디지털 모사물)** 시청각물·녹음물 등에 구현된 전자 복제물로서, AI 기술 등을 사용하여 실제 인물의 음성·모습을 정교하게 모방한 것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① 생존인물의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 ·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통해 동의를 받도록 하고, ② 사망인물의 디지털 모사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후 퍼블리시티권' 보호범위에 디지털 모사물을 포함하였음

○ 우리나라는 인격권의 한 종류로서 초상권은 인정해 온 반면,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 또한 입장이 일관되지 않아 이로 인한 침해규모 역시 커지고 있으므로 실제적 보호가 필요해진 상황 * 관계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미국의 디지털 모사물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

○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 제119대 연방의회는 디지털 모사권을 신설하는 「2025년 오리지널 콘텐츠 육성, 예술 장려 및 엔터테인먼트 보호법」 법안이 발의되었음

- 주법은 2024년 이후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디지털 모사물 이용 계약의 효력 발생 조항을 신설하였고, 사후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에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

구 분	연방법(안)	캘리포니아주법	뉴욕주법
관련 권리	디지털 모사권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
생전 이용계약 대상	일반인 [2025년 모사금지법 제2조제a항제3호]	일반인 [노동법전 제927호]	일반인 [일반채무법 제5-302조]
사후 권리 보호대상	일반인 [2025년 모사금지법 제2조제a항제3호]	사망 시 상업적 가치 소유자 [민법전 제3344.1조]	공연자 (연기·노래 등 종사자) [민권법 제50-f조]

○ **(연방법안)** 주법에서 보호되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새롭게 디지털 모사권을 신설

- '디지털 모사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음성 또는 시각적 모습을 디지털 모사물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생성·이용 허락권을 말함
- 디지털 모사권은 ①재산권으로서, ②해당인의 생애 동안은 양도할 수 없지만, ③권리소유자는 전부(또는 일부)의 권리를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라이선스 할 수 있음
- 디지털 모사권의 소유권뿐 아니라 라이선스의 요건은 ①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②해당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③적용되는 디지털 모사물의 향후 이용에 대해 '합리적인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법)** 2024년 9월 '사후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제3344조.1조)'을 개정하여 디지털 모사물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음

- 이 개정으로 디지털 모사물이 영화나 드라마 등에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디지털 모사물을 정의하면서 광고·판매 등이 아닌 표현물 내 디지털 모사물에 대해서도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함
- 사전 동의 없이 사망한 인물을 디지털 모사물로 생성·유포·제공한 자에 대해서 법정 손해배상액 또한 증액하였음

○ **(뉴욕주법)** 2024년 12월 「일반채무법」에 '디지털 모사물 계약' 조항을 신설함

- 특히, 노동법 내 「뉴욕주 패션종사자법」을 신설하여 매니지먼트사-모델 간 디지털 모사물의 제작·이용에 대해 명확한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 2025년에는 사후 퍼블리시티권에 디지털 모사물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을 함

□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 방향

○ **(미국의 입법례)** 미국은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해 왔으며, 추가로 디지털 모사물에 대해 정의하면서 사후에도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해 왔음

○ **(우리나라 입법례)** 재산권으로서 사적 권리 보호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즉 시장 질서를 중심으로 한 행위규제 형태로 보호하고 있음

- 2026년 1월에 발의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과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배포,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명시하였음

②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

【국회도서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97호, 2026.5.12.】

□ 주요내용 (요약)

○ 독일, '26년 2월 「민간투자 촉진 및 금융입지 강화 법률」 제정 · 시행

* 자본시장, 금융감독, 거래소, 투자세제, 공시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다수 법률 종합 개정

○ EU 금융시장 관련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 독일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 및 민간투자 촉진 의의

○ 특히, '유럽 단일 정보접근 거점' (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 기반의 금융정보 디지털화, 중소기업 성장시장 상장 부담 완화 및 유통주식 비율 완화 등 통해 금융시장과 자본조달 구조 유연성 높이는 방향 제도 정비

* ESAP: 기업공시와 금융정보를 EU 차원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

○ 또한, 규제 완화 및 복수 의결권 구조 공개,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등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 병행

○ 우리나라는 독일의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 벤처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선진화, 성장기업의 상장 유인 확대 관련 입법정책적 참고 가능

□ 주요 개정 법률

개정법률	주요내용
「증권거래법」	- 체계적 내부 결제자 규정 정비, 주문정보 판매대가 수취 금지 - 통합 시세정보 시스템 구축 - '유럽 단일 정보접근 거점'(ESAP) 관련 보고 의무 강화
「증권거래소법」	- 중소기업 성장시장 상장 절차 완화, 유통주식 비율 최소 10% 허용 - 복수 의결권 구조 가진 기업의 상장 허용 / 투명성 의무 강화
「주식법」	- 액면주식의 최소 액면가 및 무액면주식의 최소 자본금 비중 낮춤 - 보수체계 · 주주권 행사 정보의 ESAP 제출 의무화
「상법」 및 기업등록부 관련 법률	- ESAP 체계 도입, 금융정보 및 지속가능성 정보 전자제출 의무화 -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추출형 포맷 제출 의무 도입

개정법률	주요내용
「은행법」	- EU 중앙예탁기관 규정 이행, 제3국 금융회사의 영업허가 예외규정 정비 - ESAP 관련 보고체계 도입
「투자세법」	- 펀드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관련 세제요건 완화 - 적극적 자산운용 허용 범위 확대
「자본투자법」	- 재생에너지 생산・운송・저장시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에 대한 펀드의 직접 투자 및 운영 허용
「부동산투자신탁법」	- 부동산투자신탁의 자산 및 수입 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투자 범위 확대
「자금세탁방지법」 및 감독 규정	- 자금세탁방지 감독권한 정비, 감독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 EU 자금세탁방지 지침과 EU 자금세탁방지청 관련 규범 수용

□ 주요내용

① 금융정보 인프라 및 시장투명성 개선

가. 유럽 단일 정보접근 거점(ESAP) 체계 도입

- EU의 ESAP 관련 지침과 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 기업 재무정보나 지배구조 정보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나. 주문정보 판매대가 수취금지 및 거래 데이터 투명성 강화

- EU 지침에 따라 증권회사가 개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을 특정 거래소나 시장 조성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 금지

② 자금조달 및 상장요건 유연화

가. 중소기업 성장시장 상장절차 완화

- 중소기업과 성장기업의 상장 절차 간소화, 공시 부담 감소 방향 법률 정비

나. 유통주식 비율 완화 및 복수 의결권 구조 허용

- 상장 시 일반 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유통주식 비율을 최소 10%까지 낮춰 조정

다. 최소 액면가 인하 및 주식 구조의 유연화

- 액면주식의 최소 액면가와 무액면주식의 1주당 자본금 비중을 최소 1유로센트 (약 17원)까지 허용

③ 펀드의 투자범위 확대

가. 재생에너지 · 인프라 투자 확대

- 투자펀드가 재생에너지 생산 · 운송 · 저장시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을 직접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나. 부동산투자신탁의 투자범위 확대

- 부동산투자신탁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시설, 에너지 관련 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 확대

④ 준법 감독 체계 정비

가.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 EU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침과 규정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 감독기관의 권한과 정보전달 체계 정비

나. 보고 · 등록 · 감독 체계 정비

- 금융회사와 기업의 보고 · 등록 · 공시 절차 표준화 · 디지털화

□ 독일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관련 제도 비교

구 분	독일	우리나라
공시체계	EU차원 통합제공 (ESAP)	전자공시시스템 (DART)
투자촉진 입법	상장규정, 공시, 투자세제, 금융감독, 자금세탁방지 등을 포괄 개정입법으로 일괄정비	개별법률과 정책수단별 분산 운영 (제도 간 연계성 상대적으로 제한)
유통주식 비율	일반 주주 보유비율 최소 10%	상장 시 일반주주 수, 유통가능 주식수 등 비교적 엄격한 요건 유지 (소수주주 보호 중심)
복수 의결권 주식	중소기업 성장시장 및 다자간거래시스템에서 상장 허용	비상장 벤처기업에 제한적 허용 (상장 이후 1주 1의결권 원칙)
최소 액면가	액면주식·무액면주식 모두 1유로센트까지 허용	액면주식은 100원 이상, 무액면주식은 제도상 허용
펀드 투자범위	재생에너지·인프라·전기차 충전시설 등 실물자산 투자 허용	금융투자 중심 운영 (일부 인프라·벤처투자 중심 제한적 허용)
감독 / 준법체계	유럽 단일 정보접근 거점(ESAP), 자금세탁방지(AML), 법인식별번호(LEI) 등 활용 디지털 기반	감독체계는 존재하나, 기관별·제도별 분산 운영 (데이터 연계·통합수준 제한적)

□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 방향

○ 자본시장 선진화,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정보 통합공시, 투자촉진 패키지 입법, 상장제도 개선, 장기투자 기반 확충 등 종합 검토 필요

○ 벤처기업 상장 유인 확대, 금융정보 통합공시,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은 개별 제도로 분산하여 접근하기보다 상호 연계된 정책 패키지로 검토하는 방안 참고

○ 복수 의결권 구조는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에 도움될 수 있으나,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시 · 의결권 제한 장치와 함께 신중 접근 필요

Ⅴ. (법제처) 자치법규 법령 해석 사례

Ⅴ.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1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에 대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 여부 등 [법제처 26-0229,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2026. 5. 26.]

□ 질의요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8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제2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이를 같은 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이를 같은 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품등의 가액 범위를 정하면서 축의금·조의금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탁금지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조사비 상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조사비만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에 비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금품등 외의 금품등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금품등과 구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을 별도로 보충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서 이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에 대한 가액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에 대해서까지**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수수를 할 수 있는 금품등의 범위가 입법취지에 반하여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로서, 특히 같은 법 제8조는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에 대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청탁금지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인 2016년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축의금 · 조의금 상한액은 10만원이었으나, 2018년에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청탁금지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5만원으로 조정된 것인바,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고자 수수가 허용되는 경조사비 가액 범위를 하향 조정해 온 입법 연혁 역시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인 2016년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축의금 · 조의금 상한액은 10만원이었으나, 2018년에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청탁금지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5만원으로 조정된 것인바,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고자 수수가 허용되는 경조사비 가액 범위를 하향 조정해 온 입법 연혁 역시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을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라 하더라도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제8호의 예외 사유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취지가 몰각되고, 허용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또한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이를 같은 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②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인 명의 통장 대신 대리인 등 통장으로 지급 가능 여부 (법제처, 26-0250, 국방부 / 회신일자: 2026. 4. 27.)

□ 질의요지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함)을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지급 신청서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세대 대표자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세대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 다른 세대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나.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대리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회답

가.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세대 대표자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그 통장에 다른 세대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대리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그 통장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범위에 세대 대표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등 포함)'과 '신청인'을 구별하고 있고, **같은 영 제18조에서도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신청인' 명의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등 포함)'은 절차적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반하여, **'신청인'은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개인, 즉 개별 세대원을 의미하므로, 개별 세대원의 거래통장으로만 입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의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그 효력을 규정하고 있고,

군소음보상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보상금은 세대원 개인의 소음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서**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소음영향도 · 거주기간 · 전입시기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산정되는 특성이 있는바,** 이러한 개별적 · 전속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그 지급 역시 권리 주체인 각 세대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군소음보상법의 입법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보상금의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면 그 금전적 성격으로 보상금의 대리 신청보다도 엄격한 위임 · 확인 절차 및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되어야 할 것인데, **군소음보상법령에는 보상금 대리 수령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만약 수령 권한의 위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과 확인 절차 없이 세대 대표자의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보상금이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괄호를 두어 '세대 대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본문에서 "세대 대표자"에게 "보상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 대표자가 세대를 대표하여 신청함과 동시에 세대원의 보상금도 세대 대표자 명의의 거래통장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은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한 개인의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세대원의 편의를 위하여 세대 대표자가 신청을 대리하더라도** 이는 신청 절차에 한정되는 것이며 지급은 권리의 귀속 주체인 본인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본문의 규정 역시 **세대 대표자에게 같은 세대원의 보상금 신청에 대한 절차적인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일 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 즉 실체적인 권리까지 위임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세대 대표자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그 통장으로 다른 세대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범위에 대리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대리인 등 포함)'과 '신청인'을 구별하고 있고, 같은 영 제18조에서도**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신청인' 명의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대리인 등 포함)'은 절차적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반하여, '신청인'은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의미하므로, 해당 주민 본인의 거래통장으로만 입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의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그 효력을 규정하고 있고, 군소음보상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보상금은 개인의 소음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서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소음영향도 · 거주기간 · 전입시기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산정되는**

특성이 있는바, 이러한 개별적 · 전속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그 지급 역시 권리 주체인 주민 개인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군소음보상법의 입법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보상금의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면 그 금전적 성격으로 보상금의 대리 신청보다도 엄격한 위임 · 확인 절차 및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되어야 할 것인데, **군소음보상법령에는 보상금 대리 수령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만약 수령 권한의 위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과 확인 절차 없이 대리인의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보상금이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괄호를 두어 '대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본문에서 "보상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이 보상금을 대신하여 신청함과 동시에 보상금도 대리인 명의의 거래통장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보상금은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한 개인의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대리는 신청 절차에 한정되는 것이며 지급은 권리의 귀속 주체인 본인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본문의 규정 역시 대리인에게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에 대한 절차적인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일 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 즉 **실체적인 권리까지 위임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대신 대리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그 통장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Ⅵ. (생활법령정보) 이야기로 풀어보는 재판

Ⅵ. [생활법령정보] 이야기로 풀어보는 재판

❑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비대면 대출계약은 유효할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모의평결일자: 2026. 4. 16.]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비대면 대출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

어느 날, 나명의씨는 딸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칭범은 나명의씨에게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고,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까지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칭범은 나명의씨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A저축은행의 비대면 절차를 이용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한 뒤 9,000만원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이후 나명의씨는 이 사건이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명의씨는 "A저축은행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A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명의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 관련 조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 당사자의 주장

❶ (나명의씨) A저축은행의 본인확인 절차가 너무 허술했어요! 사칭범이 제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해 본인확인 절차를 대신 진행했고,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거래 당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찍어둔 파일을 제출했던데요. 이걸 어떻게 이걸 '제 의사'로 한 거래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대출 신청을 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으니 이 대출계약은 무효입니다!

❷ (A저축은행) 저희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진행했고, 외관상 신청자는 분명히 나명의씨 본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은 원본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해당 사진이 언제 촬영됐는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입니다.

□ 결과

① A저축은행이 비대면 대출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기존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쳐, 전자문서가 나명의씨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인정된 점,

② 비대면 거래의 기술적 특성과 절차의 목적 등에 비추어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본인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법 제7조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유

위 사례는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비대면 대출계약에 대해 계약 당시 해당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❶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7조 제2항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2호에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 조치 또는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❷ 피고 은행은,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서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 파일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② 원고 명의로 소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기존계좌에 1원을 이체한 후 위 계좌의 입금자명으로 확인된 인증번호를 통한 인증, ③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④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 ⑤ 원고의 신용정보 조회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등 절차를 거친 후 원고 명의의 전자서명을 받았다. **피고 은행이 이행한 이와 같은 본인확인절차는 원고 명의로 작성된 신용대출 신청확인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❸ 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대출 신청 당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원본을 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이 아니라 사전에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은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증표 사본인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제출받아 자동화된 방식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의 특성상 피고 은행이 거래 당시에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❹ 따라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명의가 도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비대면 거래에서 당시 기술수준에 적합한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다면, 그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이 명의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